

# 페인트 관리

---

2014년 페인트 관리법(Paint Stewardship Act of 2014)에 따라 페인트 제조업체는 쓰다 남은 페인트를 수거 및 재사용,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대표 기관은 에너지 환경부(Department of Energy & Environment, DOEE)에 등록하고, 등록비를 납부하고, 페인트 재활용 및 관리 계획을 제출하며, 수거 및 재활용 활동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페인트 소매업체는 폐기된 페인트의 책임 있는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페인트 가격에 페인트 관리 산정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페인트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조직인 PaintCare, Inc.는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Paint Stewardship Program)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OEE는 2016년 8월 1일에 PaintCare의 [개정된 계획](#)을 승인했으며 PaintCare는 2016년 11월 1일 본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PaintCare는 2021년 8월에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을 DOEE에 제출했으며, DOEE는 2021년 12월 17일 개정안이 포함된 [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 PaintCare

PaintCare는 소매점 수거처, 1일 페인트 수거 이벤트, 최소 5갤런의 페인트를 보유한 가구를 위한 방문 픽업 서비스, 100갤런 이상의 페인트를 보유한 모든 주인을 위한 대량 픽업 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쓰다 남은 페인트의 수거 활동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페인트 수거처를 찾거나 수거 일정을 잡으시려면 [PaintCare의 컬럼비아 특별구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855) 724-680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정 및 사업장용 무료 페인트 수거 이벤트:

<https://doee.dc.gov/paint>

## 페인트 소매점

- 2016년 11월 1일부터 모든 페인트 소매업체는 DC에서 판매되는 페인트 구매 가격에 PaintCare 수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PaintCare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산자와 소매점은 DC에서 PaintCare에 등록된 건축용 페인트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PaintCare의 [등록 제조업체](#) 및 [브랜드 목록](#)을 확인하세요.

## 시행

DOEE는 2020년 1월 17일에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위반](#) 사례들을 규정하는 규칙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DOEE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OEE는 페인트 관리 요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

PaintCare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productstewardship@dc.gov](mailto:productstewardship@d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리소스

- [Paint Stewardship Act of 2014\(2014년 페인트 관리법\)](#)
- [Paint Care's Modified Plan\(Paint Care의 수정된 계획\)\(2021년 12월\)](#)
- [PaintCare's Revised Plan\(PaintCare의 개정된 계획\)\(2016년 7월\)](#)
- [PaintCare Regulations\(PaintCare 규정\)](#)
- [PaintCare DC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 2017년 연례 보고서](#)
- [PaintCare DC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 2018년 연례 보고서](#)
- [PaintCare DC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 2019년 연례 보고서](#)
- [PaintCare DC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 2020년 연례 보고서](#)

## 첨부파일:

-  [PaintCare 컬럼비아 특별구 2016 프로그램 계획-7월](#) - 6.6MB(pdf)
-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규칙 제정 의견에 대한 DOEE의 답변](#) - 239.7KB(pdf)
-  [PaintCare 규정](#) - 288.2KB(pdf)

## 관련 콘텐츠:

[지속가능 소재 관리](#)

[전자제품 재활용](#)

[재활용, 폐기물 및 유해물질](#)